

■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9.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4.12.24>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4.12.24.>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0.1.>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0.1.>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12.24.>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8.9.27., 개정 2019.10.1.>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18.9.27.>
1.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2.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인사규정 제84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9., 2012.12.21.>

1. 의사직 - 65세
 2. 연구직.사무직.간호직.약무직.보건직.의학물리학직 - 60세 <개정 2015.12.24.>
 3. <삭제 2015.12.24.>
-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말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 다만, 의사직의 경우는 3월에서 8월 사이는 8월말일에, 9월에서 익년도 2월 사이에는 익년도 2월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0.11.9.>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규정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규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서류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 또는 면접시험 전에 학교성적 등에 의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 능력 등을 검정한다.
 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형,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따라 검정한다.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심사,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인사규정 제16조(합격자 결정)** ①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하되,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용전형단계별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1.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2. 합격 또는 임용된 직원이 채용비리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 되는 경우
 3.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예비합격자 중에 최종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경우에는 최종전형단계의 예비합격자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 **직원채용세칙 제17조(채용시험의 가산점 기준)** ①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은 규칙 제12조를 따르며,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부가점수는 채용 직종·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가산점 부여는 서류심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서류심사 과목당 4할 미만 이거나 전 과목 평균 6할 미만 득점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서류심사에 한해 일괄 합격 처리하고, 이후 전형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9.>
 - ③ 제1항에 의한 가산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2조(공개채용시험의 특전)** ① 공개경쟁 채용 전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만점에 해당 비율의 가산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 또는 10% <개정 2017.03.23., 2024.12.31.>
 2. 업무지원직원 또는 비정규직원수련생 포함중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평가 총점이 8할 이상인 자 : 5% <개정 2024.12.31.>
 3. 업무지원직원 또는 비정규직원수련생 포함중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근무평가 총점이 8할 이상인 자 : 3% <개정 2024.12.31.>
 4. 업무지원직원 또는 비정규직원수련생 포함중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근무평가 총점이 8할 이상인 자 : 1% <개정 2024.12.31.>
 5. 기타 전문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인사위원회 및 의사직인력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5% 이내 <개정 2017.03.23.>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가산은 과목당 4할 미만 이거나 전과목 평균 6할 미만 득점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 **직원채용세칙 제19조(예비합격자의 운용)** ① 병원장은 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거 각 채용전형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관리하며,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 순으로 서류심사의 예비합격자는 아래의 표 기준으로 선발하고, 면접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직종·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시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예비합격자 사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전형별 선발인원	1명 3명	4명 6명	7명 10명	11명 20명	21명 30명	31명 40명	...	91명 100명	101명 500명	501명 이상
예비합격자 운영인원	3명 이내	4명 이내	5명 이내	6명 이내	7명 이내	8명 이내	...	14명 이내	15명 이내	20명 이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전형별 평가점수가 과목당 4할 미만, 평균 6할 미만인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로 지정할 수 없다.
- ③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 ④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존재, 퇴직 등의 사유로 추가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전형단계의 예비합격자 중에서만 채용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당해 채용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연단위 대규모로 채용하는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